

창원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0가단1264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7. 3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0. 8. 5. 접수 제10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 . 소외 C 은 D 주식회사 (이하 'D' 이라 함) 의 대표이사로서 2020. 5. 7. 원고와 , D 의 E(주) 와의 ' 마스크제작기계제작 ' 거래로 인한 선급금 담보용 이행 (상품판매대금) 보증보험계약 (이하 ' 이 사건 보험계약 ' 이라고 함) 을 보험금액 110,000,000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고 당시 주채무자 D 을 위한 연대보증약정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.

나 . E 은 2020. 8. 6. 경 원고에게 D 이 앞선 2020. 5. 28. 자로 납품미이행을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, 원고가 같은 해 9. 4. E 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100,000,000 원을 지급하였으며 , 이로써 원고는 D 및 연대보증인인 C 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100,000,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9. 5. 부터 2020. 10. 4. 까지는 연 6% , 2020. 10. 5.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%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.

다 . 한편 , C 은 위 보험사고 발생직전인 2020. 7. 31. 자 당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을 D 의 이사로서 지인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 (이하 ' 이 사건 매매계약 ' 이라 한다) 을 체결하고 같은 해 8. 5. 제 10919 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.

라 . C 은 현재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태로서 무자력자이다 . [인용증거] 갑 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 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, 원고의 사전구상권은 D 이 납품미이행을 한 2020. 5. 28. 자로 발생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C 및 D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며 , 그 직전에 체결된 채무자 C 의 피고에 대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인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C 의 공동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, 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.

나 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정당한 매매계약으로서 선의라고 항변하나 , 을 1 내지 8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,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무렵의 시가가 28,099,300 원 정도임에도 (감정인 F 의 감정결과) 피고는 20,000,000 원에

이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그 매매대금 전액으로 약정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점 ,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매매대금의 입금액이 외견상 D 을 위한 자금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이나 , 소액의 근로채권자들을 위한 임금으로 사용되는 외에는 거의 C 이나 지인에게 다시 유입되는 상황이었던 점 (을 3, 4, 5) 등에 비추어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.

3. 결론

그렇다면 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. 원고 승소 .

판사 예지희